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387,859,338	11,635,780
일반회계	359,806,653	10,794,200
특별회계	28,052,685	841,581
기타특별회계	28,052,685	841,581
상수도사업	1,977,972	59,339
하수도사업	1,546,383	46,391
수질개선	6,588,629	197,659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58,626	16,759
의료급여기금	656,250	19,688
소득특화사업	4,717,000	141,510
농공단지조성사업	198,800	5,964
공영개발사업	635,670	19,070
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	11,002,548	330,07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70,807	5,124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서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,024,214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2.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3. 재해대책 및 복구비

제 6 조 최종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간주처리 후 의회에 보고한다.(단, 군비 부담이 있을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한다.)